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31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 강선우 · 김정호 · 전혜숙

강병원 · 오영훈 · 김철민

양정숙 · 김민석 · 양이원영

김경만 · 김승남 · 이용우

인재근 · 최강욱 · 윤미향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,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.

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. 한편,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,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,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,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제4항,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).
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 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각각 "제3항"으로 한다.

-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, 전자우편 등의 통보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15조제3항제1호 중 "제14조제4항"을 "제14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3호 중 "제14조제4항"을 "제14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호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	1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	제12조의2(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혈을
	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전자혈액
	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
	<u>다.</u>
제14조(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	제14조(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
비용의 보상 등) ① 혈액원이	비용의 보상 등) ①
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	
때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	
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	<u>o</u>]
<후단 신설>	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
	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
	<u>을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
	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, 전
	자우편 등의 통보 수단으로 제
	<u>공할 수 있다.</u>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	④ 제3항
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	
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	

다.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 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하다. 제15조(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 환급적립금) ① • ② (생 략)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 1.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 용의 보상 2. ~ 4. (생 략) ④ (생 략)

수 있다.

다.	- .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	<u>⑤</u>
이 <u>제2항</u> 에 따라 헌혈증서 제	<u>제3항</u>
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	
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	
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	
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	
한다.	<u>.</u>
제15조(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	제15조(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
환급적립금) ①·② (생 략)	환급적립금) ①・② (현행과 같
	승)
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	3
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	
사용하여야 한다.	
1. <u>제14조제4항</u> 에 따른 수혈비	1. <u>제14조제5항</u>
용의 보상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	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	2
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	

- 1. 2. (생략)
- 3. <u>제14조제4항</u>에 따른 보상업 무
- 4. 5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2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4조제1항 또는 <u>제3항</u>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 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,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
 - 2. (생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4조제5항</u>
_
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데20조(벌칙)
1
2. (현행과 같음)